

# 서울특별시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702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7년 8월 30일  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추모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“추모공간의 조성·운영 등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”에서 “추모공간의 조성·운영 등”을 삭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함(안 제5조제1항).

## 서울특별시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

안 제5조 제목 중 “등” 을 삭제한다.

안 제5조제1항 중 “추모공간의 조성·운영 등” 을 삭제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5조( <u>추모사업 등</u> ) ① 시장은 <u>추모공간의 조성·운영 등 희생자를</u>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	제5조( <u>추모사업</u> ) ① 시장은 <u>희생자를</u>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4·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추모를 통하여 생명·안전 및 인권·정의에 대한 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4·16세월호참사”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.
2. “희생자”란 「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3. “피해자”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인간존엄에 대한 시민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의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.

제4조(희생자 추모계획 수립)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4·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계획(이하 “추모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② 추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추모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추모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
3. 추모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
4.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
5.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추모계획을 수립·시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 
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**제5조(추모사업)** ①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 
있다.

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  
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**제6조(위탁)**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 
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 
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은 「서울특별  
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